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미술관), 02-970-6215

제정 2013. 03. 07. 개정 2013. 09. 12. 개정 2020. 07. 13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18조제3항의 별표4에 규정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)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(이하 "미술관" 이라 한다)에 미술관 관장 (이하 "관장" 이라 한다)을 두며, 관장은 미술관을 대표하고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관장은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겸직자의 경우에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 - ④ 미술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예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⑤ 미술관에 행정실과 학예실을 둔다.
- 제3조(직무) 미술관은 국내·외의 근·현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과 보존·전시를 통하여 본교와 지역사회의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에 관련한 조사·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- 제4조(설치) 미술관의 운영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 이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된

다.

-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조형대학장, 사무국장, 대외협력본부장, 홍보실장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학예사로 한다. 제7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 - ①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
 - ② 규정의 개정
 - ③ 예산 및 결산
 - ④ 기증 작품 수용 여부 (신설 2020.07.13.)
 - ⑤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3장 운영

- 제8조(개관 및 휴관) ① 개교기념일, 법정공휴일, 방역기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 - ②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 - ③ 개관 및 전시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- 제9조(이용자 수칙) 미술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미술관 자료 및 작품 등의 훼손 및 무단반출
 - 2. 미술관 내 시설 훼손
 - 3. 전시작품을 손으로 만지거나, 촬영 시 플래쉬를 사용하는 경우
 - 4. 전시작품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관람하는 경우
 - 5. 미술관 내 흡연 및 음주 후 관람하는 경우

- 6. 기타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 행위
- 제10조(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) ①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직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미술관을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관장이 미술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- ② 자료 및 작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시설 등을 훼손한 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, 자료 및 작품가액에 해당하는 보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다.
- 제11조(운영사업) 미술관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 - 1. 미술작품 및 자료 등 소장품 보존 관리
 - 2. 작품 및 연구자료 수집
 - 3. 심포지엄 및 각종 미술행사 개최
 - 4. 국내외 유수미술관 등과 교류행사
 - 5. 미술 발전정책 연구 시행
 - 6. 교내 우수작품 전시 운영 및 관리
 - 7. 기타 미술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- 제12조(운영세칙)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183호, 2013. 3. 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09호, 2013. 9. 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43호, 2020. 7. 1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